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등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40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등	2
[참고자료] 유사 입법례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 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등

개정안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 또는 모바일 청소년증(이하 “청소년증등”이라 함)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및 청소년증등의 위조 또는 변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 제43조제4항, 제4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② (생략)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u>청소년증</u>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 ----- ----- ----- ----- <u>청소년증</u> (<u>모바일 청소년증을 포함한다</u>)----- -----.

④ (생 략)

제4조(청소년증)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청소년증)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과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청소년증(이하 “청소년증”이라 한다)은-----
-----.

④ -----청소년증-----

-----.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청소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벌칙) ① ~ ③ (생략)

<신 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증의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을 회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증의 발급, 회수 및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제4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

제4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을 사용한 자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1. 제4조제3항-----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2. 제4조제4항-----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연간 15만 건 내외로 발급하고 있으며, 9~18세 청소년의 약 16% 정도가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²⁾됨.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명, 건, %)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9~18세 청소년인구(A)	4,653,245명	4,620,564명	4,630,063명	4,594,465명
유효 청소년증(B)	784,359건	775,437건	762,928건	719,492건
청소년증 발급비율(B/A)	16.9%	16.8%	16.5%	15.7%

자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대면),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거나 교통수단,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등 청소년 우대 증빙으로 활용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³⁾한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신분확인 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요 국가 신분증은 이미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⁴⁾

< 국가신분증 모바일화 추진 현황 >

구 분	운전 면허증	국가보훈 등록증	주민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22.7월	'23.6월	'24.12월	'25.1월	'26.1월	×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개정안 제43조제4항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와 청소년증을 위조 또는

3)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신분확인용으로 활용 불가함(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에 한하여 모바일 신분증 활용 가능).

4) 국가신분증 7종 중 여권과 청소년증을 제외한 5종 모바일화 추진

-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 순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였음.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등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45조제3항은 청소년증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과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위반행위자 처벌 비교 >

개정안 조항	위반행위자	처벌
제43조제4항	-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호) - 청소년증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청소년증등을 사용한 자(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제3항	- 청소년증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제1호) - 청소년증등 외에 청소년증등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제2호)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5)은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을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④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인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나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증등의 부정사용, 위조·변조나 위조·변조된 청소년증등을 사용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청소년증등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양도받거나 빌린 행위,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 증표 제작·사용 행위(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분하여 다르게 처벌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현행법 제43조제3항6)은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계상 징역형의 상한과 벌금형의 상한을 서로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⁷⁾.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3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7) 징역형의 상한을 1년으로 할 경우에는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징역형의 상한도 6개월 이하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개정안은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한 시행일을 202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서는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확보⁸⁾ 및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⁹⁾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근거 및 진위확인 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이나, 모바일 청소년증과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자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와 벌

8)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약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7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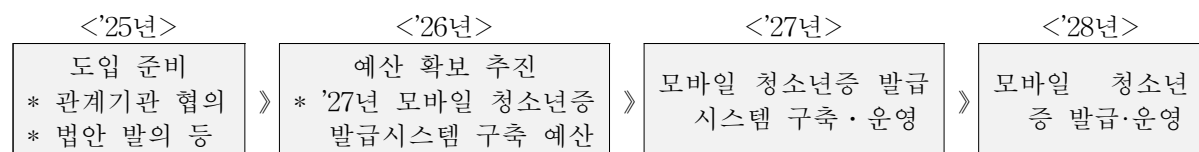
<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시스템 구축 비용(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역	비용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시스템 구축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시스템 구축 모바일 신분증 앱 고도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3,289
모바일 청소년증 HW 및 SW 구매비용	HW 및 상용SW 구매비용	2,69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코디네이터 인건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주 PM, 기획자 인건비	552
감리비	모바일 청소년증 구축 감리	621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부대비용	모바일 청소년증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166
합 계		7,318

자료: 성평등가족부

9) <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추진 일정(안) >



주. ISP를 실시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순연 예상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척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장애인 복지법」 (제20929호)	제32조(장애인 등록)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u> ④ <u>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u>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⑧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u> ⑨ <u>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87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2. <u>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u> 2의2. <u>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u>
「주민 등록법」 (제20677호)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u>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2. <u>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u> 제37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8. <u>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u> 8의2. <u>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u>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도로 교통법」 (제20677호)	<u>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도 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u> <u>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⑤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u> <u>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출입국 관리법」 (제20794호)	<u>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u> <u>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u>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